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236호

「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통합공고

「벤처 4대강국! K-유니콘 프로젝트('20.4.9, 중소벤처기업부)」의 일환으로 [1단계] 아기유니콘을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 [2단계] 예비유니콘을 K-유니콘으로 키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혁신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

K-유니콘 프로젝트 개요

□ 목적

○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유니콘** (기업가치 1조원 이상) **후보기업을 집중발굴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지위**

< K-유니콘 성장단계 >					
[1단계] 아기유니콘 기업		[2단계] 예비유니콘 기업		◆ K-유니콘 기업 ◆	
기업가치 1천억원 미만)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가치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창업진흥원)	7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기술보증기금)	7	1조원 이상	

□ K-유니콘 성장단계별 지원현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 기간	지원 내용	기업 부담금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①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② 누적 투자실적 20억 이상 100억 미만	40개사 내외	1년	시장 개척자금 3억원 등	총 사업비의 50% 이상	4.14.	5~6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①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충족기업 또는 ②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 세부사항은 공고문 7페이지 참조	15개사 내외	-	최대 100억원 이내 보증	-	~5.11.	5~7월



2 [1단계]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아기유니콘 기업을 발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천억 이상)으로 육성
- □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최종 선정기업 기준)
- □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①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2013년 4월 15일 이후 창업기업) * [참고1] 창업인정기준 참조
 - ② 공고일 기준, **투자유치 실적***(누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있는 기업** * [참고2] 모집요건 중 투자유치 인정범위 참조

※ 지원 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20.5.1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0.5.11.)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 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지원 제외 업종 >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
4	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 중소벤처기업부(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지원 Post-TIPS(포스트팁스) 선정 기업
- ☞ 기타 중소볜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2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 지원내용

○ 창업진흥원(시장개척자금), 기술보증기금(특별보증),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융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D) 등 유관기관 연계 지원

< 아기 유니콘 기업 지원내용 >

기업 당 최대 159억원 정부 지원					
직접지원	지정기의 「시장개척자금」최대 3억원 지원				
역납시전	신시장 분석, 사업도	신시장 분석, 사업모델 최적화, 시장개척 전략 수립·실행, 글로벌 시장 개척 등			
연계지원	최대 50억원	최대 50억원 최대 100억원 최대 6억원			
(각 기관에	(기술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별도신청)	특별보증		정책자금(융자)		R&D자금(가점 3점)

- ① 시장개척자금*(창업진흥원) : 신시장(국내·외) 조사, 분석 및 협력 파트너 발굴 등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원(정부지원금) 지원
 - * **총 사업비(100%)** 구성 : **정부지원금 50% 이하** + <u>선정기업 대응자금 50% 이상</u> (현금 10% 이상, 현물 40% 이하) ⇒ **최대 6억원**
- ** 최종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총 사업비	저ㅂ디의그/500/\	선정기업 대응자금(50%)			
(100%)	정부지원금(50%)	현금	현물*		
600백만원	300백만원	60백만원	240백만원		
100%	총 사업비의 5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40% 이하		

-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시장개척 관련 업무(국내·외 마케팅, 영업 등)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계상
- ** [참고3] 시장개척자금 집행 비목 참조
- ② 특별보증 (기술보증기금):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술보증 최대 50억원 우대지원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3%p감면)
- ③ 정책자금(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은 자금상환계획의 적정성 등 최소요건만 검토하는 하이패스 심사 방식으로 최대 100억원 융자 지원
- ④ R&D자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홍원) :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 '시장확대형 R&D' 참여 시 가점 3점 부여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 R&D 신청자격 충족 시 서면평가 면제
- □ 시장개척자금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



3 │ 선정평가 절차

□ 평가절차 : 총 3차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평가단계		주관기관	평가내용
요건검토		창업진흥원	·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등 요건검토
1차	기술사업성 평가	기술보증기금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 방문 등 기술·사업성 평가
2차	심층평가		·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사업계획서 토론평가
3차	발표평가	창업진흥원	· 최종 발표평가(전문평가단+국민심사단 공동평가)
최종선정			·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및 대상자별 정부지원금 확정

- * 자격요건 미충족 등 결격사유 확인 시, 최종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조치
- ① (요건검토)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누락여부 등) 검토(창업진흥원)
 - * ① 투자실적, ② 업력, ③ 채무불이행 여부, ④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⑤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여부, ⑥ 업종, ⑦ 휴폐업 여부
- ② (1차 평가)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실사 등 기술·사업성 평가 (기술보증기금)
 - * 기술보증기금이 창업기업 특성에 맞게 설계한 기술사업평가모형(KTRS-SM) 활용하여 1 경영주 역량, 2 기술성, 3 시장성, 4 사업성을 계량평가
 - ** 기술·사업성 평가결과 BB등급 이상 기업만 2차 평가 참여가능
- ③ (2차 평가) 각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한 사업계획서 심층평가(전문평가단)

< 심층 토론식 평가 기준(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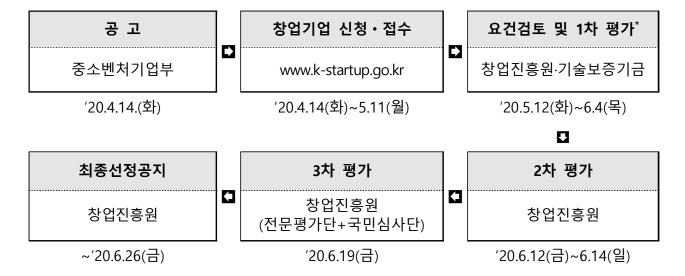
구분(배점)	평가항목
사업모델	① 신산업·신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술·사업모델 의 독창성 및 차별성
혁신성	② 기술·사업모델 이 산업 및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
(30)	③ 수익모델의 적절성 및 확장 가능성
	④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통한 외향적(재무적) 성장 가능성
성장성	⑤ 기술·사업모델의 고도화, 사업 확장 등을 통한 기업 내부적 성장 가능성
(40)	⑥ 국내·외 후속 투자유치 가능성
	⑦ 기술·사업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영진의 역량
リエトシュトレ	⑧ 주력시장 규모의 성장(확대)가능성
시장확장성 (30)	⑨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지배적 위치 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
	⑩ 창출될 신산업·신시장이 글로벌 시장 및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력



- ④ (3차 평가) 공개 발표평가 (전문평가단, 국민심사단)
- ⇒ 전문평가단, 국민심사단 공동평가^{*} 결과에 따라 아기 유니콘 최종 선정
 - * 공동평가 지표 : ①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60점), ② 해당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길 지지·응원하는 정도(30점), ③ 사회공헌 가능성(10점)

4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차 평가 : '20.5.19.(화)~6.1.(월) 기간 중 기업 현장방문(기술보증기금)

5 참고사항

□ 아기유니콘 기업의 혜택

- **(K-유니콘 네트워킹)**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Top-tier 투자자 및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유니콘 멤버십 프로그램) 현재 유니콘 기업, 투자자와 함께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긴밀한 네트워킹 형성 및 지원
- **(K-유니콘 브랜드 홍보)** 국내·외 K-유니콘 브랜드 및 아기유니콘 기업의 지속적인 홍보 지원



□ 평가·선정 관련 유의사항

- 1차 평가 관련, '20.5.19.(화) 이후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방문 관련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기간 내에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안내할 "아기유니콘 200 육성 사업 세부관리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창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협약체결이 가능 합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과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년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창업이력관리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선정된 후라도 투자유치 내역 등 실적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제재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2단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 1 모집개요
- □ 사업목적
 - 시장성·성장성 등이 검증된 혁신기업에 스케일업 금융을 지원 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 촉진
-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총 사업 규모 1,000억원 내외에서 선정)
- □ 지원대상: 비상장기업*으로서 이래 ① 또는 ②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기업
 - *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가능
 - ① 아래 신청 자격요건인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신청 자격요건 >

요건	주요내용
	○ 국내외 벤처투자기관 ¹⁾ 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 ²⁾ 유치기업
① 시장검증	1) 벤처투자기관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경영 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외국투자회사(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해외투자기관으로 벤특법 제2조에 의한 투자방식으로 투자 받는 경우). 다만, 개인투자자와 개인투자조합은 제외 2) 지원대상 투자범위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투자계약 및 주금납입 완료된 신주투자(보통주·우선주·CB·BW)에 한함
② 성장성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 * 기준연도('16년)말 상시종업원 5명 이상이고 최근 월말 상시종업원 10명이상인 기업으로, '19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6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대비 72.8% 이상 증가
	2)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17.1월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 * 최근 월말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19년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8년 재무제표상 매출액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
③ 혁신성	○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시장검증과 성장성 요건을 통과한 기업(1차 평가 통과기업) 중 혁신성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2차 평가 통과기업)을 3차 예비평가 대상기업으로 운용



②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가치 산정기준 >

요건	주요내용
□ 기업가치	○ 주식 투자 :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x 총 발행 주식수 ○ 전환사채 투자 : 주식 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기준시점 : 과거 3년간 신주투자(보통주·우선주·CB·BW) 중 접수종료일로부터 역산하여 누적 투자금액이 25억원이 된 투자건을 기준으로 판단

⇒ 다만, 제①항 또는 제②항을 충족하더라도 기술보증기금 규정에 따른 보증취급제한(보증금지·제한기업)[참고4], 보증제한 업종[참고5] 및 책임경영심사 결격요건[참고6]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2 보증지원내용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내					
* 기존 보증금액(기보, 신보, 지역신보) 포함 * 신보거래기업은 기보로 전환보증 후 특별보증지원 가능(중복보증 불가)					
운전자금 보증한도 30억원까지는 추정매출액의 1/2을 적용하여 산출					
R&D자금	R&D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작비, 인건비 등 20억원까지 지원				
시장개척자금	글로벌 진출자금은 10억원까지 지원				

□ 보증우대

- **보증비율** : **95**% (협약금융기관* 이용 시 전액보증)
 -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보증료** : **1**% (고정보증료율)



3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 일정

□ 평가절차 및 추진 일정

구분	주요내용	시기
사업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20.4.14.(화)
$\overline{\mathbb{Q}}$		
신청·접수	▶ 우편, 이메일(unicorn@kibo.or.kr), 방문	'20.4.14.(화) ~'20.5.11.(월)
\Box		
1차 평가(서면평가)	▶ 대상기업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등 심사	'20.5월초
2차 평가 (기술평가·보증심사)	▶ 1차 평가 통과기업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수행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20.5월중 ~6월말
\Box		
3차 예비평가 (선정위원회)	► 최종평가 대상기업(30개사 내외) 선정 * 투자금액, 기업가치, 투자기간, 기술평가등급, 매출증가율 등 지표활용	'20.7월초
Ţ		
최종평가 (국민참여전문가평가)	► 공개 발표평가 및 국민참여전문가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20.7월초
Ţ		
보증지원	▶ 최종 선정기업 발표, 보증서 발급	'20.7월중~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① 3차 예비평가 (선정위원회) 평가기준(안)

평가기준	배점	세부평가지표
1. 투자유치금액	20	누적투자유치금액
2. 기업가치	20	주식 투자 :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x 총 발행 주식수 전환사채 투자 : 주식 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기준시점 : 과거 3년간 신주투자(보통주·우선주·CB·BW) 중 접수종료일로부터 역산하여 누적 투자금액이 25억원이 된 투자건을 기준으로 판단
3. 투자유치기간	15	최종 투자건으로부터 역산하여 누적 투자금액이 25억원에 달하는 투자일로부터 접수일까지 기간
4. 기술평가등급	15	기술평가결과 반영
5. 매출액증가율	10	사업공고 직전년도까지 3개년 매출증가율
6. 고용증가율	5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사업공고 직전년도까지 3개년고용증가율
7. 특별보증 지원 적합성	15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지원 적합성 여부를 기보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② 최종평가 (국민·전문가평가) 평가기준(안)

평가기준	배점	세부평가지표		
1. 유니콘기업 가능성	60	아이템.사업 모델 혁신성 (10)	기존 기술·사업모델 대비 독창성과 차별성(경쟁우위) 기술·사업모델 자체의 난이도(진입장벽) 핵심 지식재산권 보유여부, 새로운 시장개척기술 등	
		성장성 (10)	최근 매출 성장세의 양적·질적 건전성 주력시장의 규모, 주력시장 성장성, 시장점유율 해외시장 진출현황(가능성 포함) 등	
		고성장 지속가능성 및 경쟁 강도(10)	시장 선도.지배적 위치 확보(가능성) 여부, 대기업 등 경쟁기업 출현 가능성(진입장벽 정도) 등 브랜드 또는 제품의 시장 내 인지도 등	
		수익창출 가능성 (10)	사업모델 및 전략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수익모델의 적정성 및 확장성 매출 및 비용계획의 적정성 등	
		후속투자유치 가능성 (20)	시장·고객 점유율 증가 현황 및 향후 전망 투자유치실적, valuation 및 투자 배수 실적 현재 VC와 협상진행 여부 및 내용 IPO 가능성 및 시기 등	
			※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취지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2. 특별보증 지원 타당성	20	특별보증지원 필요성 및 제도취지 부합성 (20) 적자여부 등 현행 재무상태 및 그간 투자유치실 특별보증 이외 자금조달 대안 및 가능성 대규모 민간자금유치 이전까지 선제적 투자에 필요한 자특별보증 지원 시 성장가능성 제고 정도 대규모 투자유치 가능성 제고 및 기업가치 제고 경		
3. 자금지원 효과성	10	지금규모 및 활용 적정성 (10) 필요자금 학보방안 자금 활용용도(개발, 마케팅, 글로벌진출 등) 적정성 향후 투입자금 회수방안의 적정성 등		
4. 성과공유 가능성	10	사회 환원· 공헌가능성 (10)	수익환원(Startup 투자, 보육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재능기부(후배기업 멘토링(BM수립 등), 기술/디자인 전문 교육 등 후배 양성)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경영 등 실적 및 실행가능성	
5. 가점	10	기업가치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기업에 한해 가점 차등	

^{*} 세부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기업으로 분류 되어 향후 보증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19년도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4 공통사항

- 1 신청 및 접수
- □ 신청 · 접수기간
 - ㅇ 2020년 4월 14일(화) 09:00 ~ 5월 11일(월) 15:00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통합 안내 페이지 : www.k-unicorn.or.kr 참조

항목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신청 방법	○ K-Startup (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 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 제출처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7층 * 우편접수 : '20.5.11(월)까지 제출처 도착분에 한함 * 방문이메일 접수 : '20.5.11(월) 15:00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unicom@kibo.or.kr) 접수 건에 한함
제출	① 사업계획서[별첨2] ② 사전동의서[별첨7] * 기술보증기금의 1차 평가를 위한 동의서 ③ 투자계약서 *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 계약체결일 등이 확인 가능한 투자계약서(사본) ④ 최근 3년분 재무제표 ⑤ 주주명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⑦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⑤~⑧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⑨ 채무변제 관련 서류(해당 시)	① 기술사업계획서[별첨5] ② 투자유치 내역서[별첨6] ③ 기준년도('16년)말 및 최근 월말 고용 보험가입자 명부 각 1부 * 4대보험가입자명부도 가능(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상시종업원 인정) ④ 사전동의서[별첨7] ⑤ 주주명부 ⑥ 투자계약서(사본) *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 계약체결일 등이 확인 가능한 투자계약서(과거 3년간 신주 투자 중 접수종료일로부터 역산하여 누적 투자금액이 25억원이 된 투자건 일체)
기타	○ 3차 평가 대상자는 국·영문 PPT 발표 자료 별도 제출(추후 안내)	○ 최종평가 대상자는 PPT 발표자료 별도 제출(추후 안내)



2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문의처	
	사업내용 관련	창업진흥원	02-3440-7300, 7302, 7314, 7330	
아기 유니콘 200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진흥원		
	사업계획자 극성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온라인 시스템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사업내용 관련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사업부	051-606-7671, 7674	
	사업계획서 작성	기술보증기금	1544-1120	

3 유의사항

- □ [1단계] 아기 유니콘 및 [2단계] 예비 유니콘 기업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동시 신청은 불가**하며, 동시 신청한 경우 **1단계**, **2단계 모두 신청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선정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참고 1. (아기유니콘 200) 창업인정기준
 - 2. (아기유니콘 200) 모집요건 중 투자실적 인정범위
 - 3. (아기유니콘 200) 시장개척자금 집행 비목
 - 4. (예비유니콘) 기술보증 취급제한
 - 5. (예비유니콘) 보증제한 대상업종
 - 6. (예비유니콘) 책임경영심사 결격요건



- 별첨 1. (아기유니콘 200)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 2. (아기유니콘 200) 사업계획서 양식
 - 3. (아기유니콘 200)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4. (아기유니콘 200) 증빙서류 양식
 - 5. (예비유니콘) 기술사업계획서 양식
 - 6. (예비유니콘) 투자유치내역서 양식
 - 7. (아기유니콘 200·예비유니콘) 사전동의서 양식



(아기유니콘 200) 창업인정기준

-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20.4.14.) 기준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 (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를 결정합니다.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①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 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 (개인, 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 개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이종 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사업승계의 경우 제외)

②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 (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 폐업 기업 포함
- □ 기존 기업 (개인, 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이전(재창업)에 해당
-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아기유니콘 200] 모집요건 중 투자실적 인정범위

□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
-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법률」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 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⑦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②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③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④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PEF)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른 **액셀러레이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27항과 동법 제117조10에 따라 온라인소액 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지분 증권에 투자하는 자
- 6.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항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외국투자회사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투자실적 제외



[아기유니콘 200] 시장개척자금 집행 비목

□ 시장개척에 필요한 직접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비목	내용	
시장조사비	소비자 타깃 설정 및 니즈 파악 등 시장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구매, 소비자 수요동향, 수입동향, 경쟁동향, 해외(수출)동향 등 조사 의뢰비용, 원부자재 공급선 등 신규 업체발굴에 필요한 조사비용 등	
시장개척비	타깃시장 진출·거점마련에 필요한 현지법인 설립, 온·오프라인 시장 입점 또는 임차 비용, 전시회/박람회/학회/세미나 등 시장개척 관련 행사 참가비, 보험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서비스 비용	
광고선전비	브랜드 개발 비용, 디자인 개발, 타깃 시장 홍보물(영상, 광고, 일간지 등) 제작비, 온·오프라인 광고게재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제품개선비	창업기업이 시장확대를 위한 제품개선 필요 시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인건비	마케팅, 시장조사 등을 위해 기업 소속직원 및 단기근로자에 지급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회계감사비	



(예비유니콘) 기술보증 취급제한

< 보증금지기업 >

-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보증제한기업 >

- 1. 휴업 중인 기업
- 2.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3.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가. 대표자
 - 나. 실제경영자
 - 다.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7.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 4회
-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이 제한되고 있는 기업
 - * 보증브로커 개입기업, 허위자료제출기업, 금품제공기업, 부정청탁기업 등
- 9. 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또는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 기업 포함하되 기금 내규에 따라 경영개선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제외)
- 10.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11.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제13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나.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다.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 다. 제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 14. 제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예비유니콘] 보증제한 대상업종

구 분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T E	세구립증	新	舊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 불건전 여부는 도박 해당여부로 판단	3340	3340
도박 게임 관련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도박기계 임대업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6463, 47640 69390 75999 91113 91249	46463, 47640 69390 75999 91113 91249
사치 향략 관련	 주류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주류 도소매업 귀금속 도소매업 주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마사지업 	46102 46109 46331, 47221 46492, 47830 5621 91223 91291 96122	46102 46109 46331, 47221 46492, 47830 5621 91223 91291 96122
부동산 관련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68111 68121 68221, 68222	68111 68121 68221
기타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전화방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	59142 91229 91241 96992	59142 91229 91241 96992

참고6

[예비유니콘] 책임경영심사 결격요건

구분	세부항목
결격 요건	①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경영자 본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임 ※ 단, 실제경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 시 충족으로 심사
│ (1개라도 │ "부"인	② 실제경영자가 금융질서문란,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행위 사실 없음
경우	③ 실제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음
보증지원 불가)	④ 실제경영자(본인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포함)의 정책금융(보증부대출 포함)에 대한 용도외사용 사실 없음